성주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성주군수

2. 개정이유

○ 출산장려와 다자녀가정 우대를 위해 농기계 임대 사용료 감면을 통한 우대혜택 우선 부여로 출산장려 정책 유도 및 농가경영비 경감에 기여

3. 주요내용

○ 셋째아 이상 다자녀 가정 농가(최종아 13세미만)에서 자기의 영농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농기계 임대 사용료의 2분의 1 감면 혜택

4. 관련법령

○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

5. 검토의견

□ 제출자, 개정이유, 주요내용, 관련법령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음.

□ 조례안 개정이유

○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심각한 수준(2008년도 합계출산율은 1.12명)에 있으며,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치단체별로 차별화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에 대한 시책을 시행해오고 있음.

○ 따라서 우리군도 출산장려와 다자녀가정 우대를 위하여 **농기계 임대사용료 감면**을 통하여 조금이라도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으로 생각됨.

□ 결론적으로

○ 신·구 조문 대비표 등 **제반사항을 검토한 결과** 자치입법 입안심사기준」의 규정에 적합하여 **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**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